# 목 차


**[제1장 총칙]**

제1조 목적 ---- 4
제2조 적용범위 ---- 4

**[제2장 사업]**

제3조 사업의 내용 ---- 4
제4조 사업의 목적 ---- 4
제5조 재정 ---- 4

**[제3장 기관의 운영]**

제6조 인원 및 조직 ---- 4
제7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---- 5
제8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---- 5
제9조 보수에 관한 사항 ---- 5
제10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---- 5
제11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---- 5
제12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---- 5

**[제4장 서비스 이용자]**

제13조 이용 대상자 ---- 6
제14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---- 6

**[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]**

제15조 계약의 목적 ---- 6
제16조 이용계약 ---- 6
제17조 계약기간 ---- 6
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---- 6
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---- 7
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---- 7
제21조 대상자(보호자)의 책임이행 ---- 7
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---- 7
제23조 계약해지 ---- 8

**[제6장 서비스 제공내용]**

제24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---- 8
제25조 서비스 제공내용 ---- 9
제26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---- 9
제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---- 9
제2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---- 9
제2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---- 10

**[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]**
제3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---- 10
제3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---- 10
제32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---- 10

**[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]**
제33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---- 10

**[제9장 운영위원회]**
제34조 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---- 11
제35조 운영위원회 구성 ---- 11
제36조 운영위원회 기능 ---- 11
제37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---- 11
제38조 운영위원회 운영 ---- 12

**[제10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]**
제39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---- 12

**[제11장 부칙]**
제1조 준용규정 ---- 12
제2조 시행일 ---- 12

# 제1장 총칙

**제1조【목적】**
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(이하 '**대상자**'라 한다)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,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【적용범위】**
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기관 소속 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 제2장 사업

**제3조【사업의 내용】**
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급여종류 중 본 기관은 [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] 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(이하 '서비스'라 함) 사업을 한다.

1.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, 인지활동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.
2. 방문목욕: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
3. 방문간호: 간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전문의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
**제4조【사업의 목적】**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5조【재정】**
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'공단'이라 한다)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, 대상자 본인부담금, 시·군·구 보조금, 사업수익금, 기타수입금,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# 제3장 기관의 운영

**제6조【인원 및 조직】**

1. 직원의 자격기준은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.
2.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.
3. 관리책임자(기관장)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,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.
4. 기관의 조직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되, 사업 진행시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조정 할 수 있다.